

# 법령과 문헌을 통해 본 북한 명승지의 유형과 특성\*

김서린\*\* · 성종상\*\*\*

- I. 서론
- II. 북한의 명승지 관련 법령과 문헌
- III. 북한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
- IV. 북한 명승지의 지정 현황
- V.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명승지 관련 법령과 문헌을 통해 북한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2020년 발간한 『조선명승지도감』을 통해 2017년 기준 북한 명승지의 지정 현황을 유추하였다. 북한에서는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천에 휴양소를 건립하거나 금강산 지구의 국제적인 관광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는 등 자국의 명승지를 활용하는 데 힘쓰고 있다. 향후 남북 명승지 교류를 위해 남북한의 잠재 명승 자원을

가능해보는 등의 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겠다. 이 글은 남한의 명승 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재생산되던 오류를 검토하고, 북한에서 최근 발간한 도감을 발굴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북한 경관, 역사문화경관, 문화유산, 자연유산, 남북 문화 교류

\* 이 글은 2020년 문화재청 연구보고서(북한 명승지 기초조사)와 성종상·김서린, “북한 명승지의 유형과 현황,”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박사 수료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산천이 수려한 곳을 찾아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왔다. 선조들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일컬어 승, 명승, 경승지 등으로 불러 즐겼는데 이때 ‘승(勝)’은 ‘이기다’라는 뜻이다. 이로부터 ‘더 낫다’는 의미에서 ‘아름답다’라는 뜻이 생기면서 ‘경치가 특히 좋은 곳’을 가리키게 되었다.<sup>1</sup> 한반도에서 근대적인 명승의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공표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朝鮮寶物古跡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sup>2</sup> 남한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이 보존령에 따랐으며, 북한은 1933년의 보존령을 발전시켜 1946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공표하였다.<sup>3</sup>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명승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현재 남한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따라 ‘명승’을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지만, 북한의 법적 용어는 ‘명승지’로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낫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 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들”로 정의된다.<sup>4</sup> 이 글에서는 남북의 각기 다른 용어 차이를 존중하여 남한의 경우에는 ‘명승’으로, 북한의 명승지를 언급할 때에는 ‘명승지’로 표기하였다.

최근 북한의 명승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 이후 민족유산 관련 제도의 활발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2015년에는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하면서 민족유산(남한의 문화유산)의 유형을 물질유산, 비물질

<sup>1</sup> ‘뛰어나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일반적으로 경승(景勝)이나 승경(勝景)이라고 한다. 승개(勝塏), 승개(勝概), 승지(勝地), 승치(勝致) 등으로도 불린다. 황기원, 『경관의 해석』(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 61.

<sup>2</sup> 이선, 『한국의 자연유산』(서울: 수류산방중심, 2009), pp. 55~91.

<sup>3</sup> 보존령과 함께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수속」도 공표되었다. 보존령, 시행규칙, 시행수속 등은 1933년의 보존령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박상진·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pp. 49~61.

<sup>4</sup>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2조.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20), p. 553.

유산에 자연유산을 추가하여 구분하기 시작했다.<sup>5</sup> 법령 제정을 통해 명승지와 더불어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북한 정권에서 자연유산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최근의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명승지를 통한 남북 교류 협력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 남한에서 북한의 자연유산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는 리승대·리금철의 『천연기념물편람』 등이 입수되었는데,<sup>6</sup> 이 편람의 부록에는 지정 번호가 부여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의 목록이 수록되었기에 남측 정부에서도 북한의 천연기념물의 지정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sup>7</sup> 하지만 명승지의 경우에는 명확히 드러난 바 없다. 남한의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진 북한 명승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북한 문화재를 개관하며 명승지에 대해 언급한 사례와<sup>8</sup> 명승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 현황<sup>9</sup>과 명승지의 경관 변화상에 대해 추적한 연구<sup>10</sup> 등이 이뤄졌다. 북한 명승지의 정책에 관한 연구<sup>11</sup>에서는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 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나, 김정은 시기 이후 북한에서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만큼 최근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가지정 명승지의 현황에 대해 파악한 연구는 남한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난다. 첫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연감』과 국립문화재연구소(2012)에서

<sup>5</sup> 「민족유산보호법」(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제1장 3조.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20), p. 570.

<sup>6</sup> 리승대·리금철, 『천연기념물편람』(평양: 농업출판사, 1994).

<sup>7</sup>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천연기념물 백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의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백서』(대전: 문화재청, 2003).

<sup>8</sup> 박대남, 『북한의 문화재 실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sup>9</sup> 김지혜, “우리나라 명승 지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 중, 일, 북한과의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이진희, “동북아시아 명승 보존관리 비교연구: 한국·일본·대만·중국·북한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박수진 외, 『북한지리백서』(서울: 푸른길, 2020).

<sup>10</sup> 김서린, “경승지의 정치적 변용: 북한 묘향산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sup>11</sup> 이우영, “북한 명승지 정책의 성격,” 『통일인문학』, 제53권(2012), pp. 131~170; 김성욱,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제5권 1호(2012), pp. 501~533; 이윤·차은영, “북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경제적·제도적 고찰,” 『한국자연보호학회지』 제9권 1호(2015), pp. 1~12.

발간한 『북한 국보 유적연혁자료집』에서 북한에서 지정한 명승지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sup>12</sup> 주로 16~17개의 북한 명승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소개하였다. 하지만, 지정 번호에 매칭되는 명승지의 명칭이나 지정 명승지의 개수가 보고서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조선헌토대백과』에서 발췌·정리한 명승지를 언급한 연구이다.<sup>13</sup> 『조선헌토대백과』는 통일부 산하 등록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북측 사업 주체인 ‘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협의하여 2004년 발간한 것으로, 지역별 문화유적과 더불어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같은 백과사전을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승지의 개수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오류가 재인용되며 확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헌토대백과』에 국가지정 명승지가 언급된 바 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명승지를 도출한 것인지, 명승지가 총 몇 개 기록된 것인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내용과 방법

남한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명승’의 지정 기준과 그 유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하여 문화재청의 훈령이나 시행 규칙 등의 행정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문화재청과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각종 조사 및 연구 자료를 통해 개별 명승의 보존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고시<sup>14</sup>를 통해 새로 지정된 명승의 현황에 대해 즉각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명승지와 관련된 훈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 규칙은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법령만을 통해서 명승지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과 유형 분류에 대해 면밀히 알기가 어렵다.<sup>15</sup> 또한 북한에서는 남한처럼 명승지를 지정한 후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명승지의

<sup>12</sup> 문화재청, 『문화유산연감』 (대전: 문화재청, 2000, 2002~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 국보 유적연혁자료집』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sup>13</sup>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헌토대백과』 1~20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

<sup>14</sup> 남한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sup>15</sup> 1946년도에 공표된 보존령, 시행수속, 시행규칙의 원문은 남한에 입수되었으며, 그 원문을 박상진·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pp. 49~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위 법령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지만 1946년 이후 명승지 관련 행정규칙의 원문이 입수되지 않았다.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령의 원문을 비롯하여 북한에서 1차로 생산한 문헌의 내용 분석을 통해 북한 명승지의 정의, 유형과 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명승지 관련 법령과 문헌

### 1. 법령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령<sup>16</sup>으로는 2015년 제정되어 2018년 개정된 「민족유산보호법」과 1995년 제정되어 2011년 개정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두 법령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중 후자는 북한의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기사에서 2019년 2월 개정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한에서는 2011년에 수정보충된 법령만 구할 수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2. 문헌

이 글의 또 다른 자료는 북한의 명승지와 관련된 문헌이다. 명승지와 관련된 문헌의 종류는 학술서적, 지리 교과서, 화보집, 관광지도, 백과사전, 지리백과, 도감과 편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백과사전과 지리백과 및 도감과 편람을 참고하였다. 백과사전과 지리백과는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학자들이 집대성하여 제작한 것이다. 몇 가지 백과사전 중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이 언급된 『조선대백과사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지리전서』는 1983년부터 학자 500명을 동원하여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지리를 총망라한 지리백과이다. 이 책은 총 3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6번째 책이 ‘명승지’를 주제로 하여 북한 전역과 남한의 명승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명승지

<sup>16</sup> 『북한법령집상』과 『북한법령집하』에서 명승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법령은 19개이다. 주로 보호구역 설정, 명승지에서의 관광과 휴양, 각종 개발이나 오염으로부터 명승지 보호, 명승지의 원형 보존과 명승지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정의와 유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상』(서울: 국가정보원, 2020);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하』(서울: 국가정보원, 2020).

유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도감 및 편람은 문화유물보존연구소나 조선민족유산보존사에서 발간한 자료이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우리나라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문화유물보존연구소는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전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발간한 도감이나 편람을 남한에 대응해보면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대관』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명승지의 지정 현황 분석에 있어 현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명승지, 천연기념물 도감인 <조선의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 (이하 <조선의 자연유산>)<sup>17</sup>에 주목하였다.<sup>18</sup>

이 도감은 2017년 편찬되었으나, 2020년에 DVD 형태로 발간되었으며, 『조선 명승지도감』 10권, 『조선천연기념물도감』 5권 등 총 15권의 도감으로 구성된다.

<조선의 자연유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라는 노작을 발표한 지 3년이 되던 해인 2017년에 발간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2014년 노작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여기고 있다. 이 노작에서는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여 남북,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동안 보존관리에서 소홀했던 지점을 시인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sup>19</sup> 이후 교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을 제정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10월 24일 기사에서는 이 노작이 발표된 이후 3년간 민족유산 보호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도감의 발간 사업이다. 기사에서는 제작을 다그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사이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11월 전자도서의 형태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sup>20</sup>

<sup>17</sup>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의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 (평양: 조선민족유산보존사, 2017).

<sup>18</sup>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 따르면,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등록할 때 “등록하려는 대상의 이름, 소재지, 역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현상태, 리용과 보존전망, 자연주위환경, 등록근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형도, 위치도, 사진자료를 첨부(제14조)”해야 하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자료, 역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존(제37조)”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유산 관련 기관에서 명승지별 등록서를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에서 발간한 편람이나 도감 형식의 단행본은 이러한 등록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sup>19</sup>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권 (2019), pp. 375~379.

<sup>20</sup> 강진규,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민족유산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NK경제』, 2020.11.01.,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 (검색일: 2021.12.23.).

24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전통을 빛내이는애국사업이다》를 발표하신 3돛이 되는 날이다. 이 로작에는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을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명시되어있다. …중략… 그때로부터 지난 3년간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지금 자연유산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는데 리용할 《조선천연기념물도감》과《조선명승지도감》에 대한 다매체편집물제작을 다그치고 있다.

이 도감의 머리말에 따르면, 도감은 조선민족유산보존사에서 기획되고, 김일성 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들의 주도로 편찬되었으며, 도감을 통해 명승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제공하는 것이 발간목표이다.

〈표 1〉 연구 자료로서 북한의 법령과 문헌

유형	자료 명	발간연도	발행처	
법령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1995년 제정, 2011년 개정	-	
	민족유산보호법	2015년 제정, 2018년 개정	-	
문헌	조선말대사전	199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001	조선컴퓨터센터 프로그램개발처	
	조선지리지전서: 명승지	1987	교육도서출판사	
	도감, 편람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편람	1966	문화유물보존연구소
		조선명승지도감	2017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출처: 저자 작성.

### Ⅲ. 북한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

#### 1. 북한 명승지의 법적 정의와 유형

북한에서 ‘명승’의 법적 용어는 ‘명승지’이다. 2011년 개정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2조에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들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이 파기되고,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령에 따라 북한의 ‘민족유산’은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되었다. ‘명승지’는 ‘천연기념물’과 더불어 ‘자연유산’에 속한다(제3조)(〈표 2〉 참조). 「민족유산보호법」은 2018년 한 차례 더 개정되었는데, 동법에 따르면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섬,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강천, 로두와 같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표 3〉 참조) 2015년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 상에서는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 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라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구분하여 유형을 언급하고 있지만, 2018년 개정된 법령에서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유형을 통칭하여 서술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명승지의 종류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속한다.(〈표 3〉 참조) 남한의 「문화재훈령」에서는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으로 구분하며, 자연명승에는 산악형, 도서해안형, 하천·계곡형이, 역사문화명승에는 마을숲·정원형, 사찰형, 산업기반형이 속한다. 또한 명승지의 세부 유형별 핵심경관요소와 인간의 행동양식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법령상 주로 명승지의 자연경관적인 특질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추후 북한 명승지와 관련된 세부 강령이나 지침 등을 확보하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2〉 북한 민족유산의 법적 유형과 명칭지

문화유물보호법 (1994 제정)				문화유산보호법(2012 제정), 명칭지·천연기념물보호법 (1995 제정)				민족유산보호법(2015 제정), 명칭지·천연기념물보호법 (1995 제정)					
구분		평가		구분		평가		구분		평가			
문화유물	역사 유적	국보	준국보	일반	물질 문화유산	역사 유적	국보	일반		물질 유산	역사 유적	국보	보존
	역사 유물					국보	준국보	일반	역사 유물		국보	준국보	일반
					비물질 문화유산	국가	지방		비물질 유산	국보	지방		
					명칭지, 천연기념물	명칭지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명칭지 천연기념물				

주: 김현우·이선복,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연구: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제52권 4호 (2019), pp. 4~17를 수정하였음.

〈표 3〉 북한의 법령으로 본 명칭지 정의

법령	관련 조항	관련 조항
명칭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1장 제2조 (명칭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이다.</li> <li>명칭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li> </ul>
민족유산 보호법 (2015년 채택, 2018년 수정보충)	제1장 제3조 (민족유산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유산은 대상에 따라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li> <li>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 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li> <li>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의술, 사회적 관습, 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기술과 같은 것이 속한다.</li> <li>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섬,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강천, 로두와 같은 명칭지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li> </ul>

\*출처: 북한 법령에 기초하여 저자 구성.

## 2. 북한 명승지의 사전적 정의와 유형

『조선말대사전』에서 ‘명승지’를 검색해보면,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이름난 곳”으로 정의되며 그 예로는 “금강산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명승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명승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창조물이 있는 곳”으로 정의된다. 또한 이 사전에 따르면, 명승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과 “인간이 오랜 역사를 두고 이룩한 창조물들이 있는 곳”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자연환경을 가진 명승지는 산, 해안, 강 또는 호수가, 지하로 구분되며, 인간활동에 의한 창조물을 가진 명승지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혁명사적물을 가진 명승지, 역사유적유물을 가진 명승지, 문화오락시설을 가진 명승지”로 구분하고 있다. 혁명 역사와 관련된 명승지나 문화오락시설을 포함한 곳을 명승지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남한과는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조선대백과사전』에 나타난 명승지의 유형

유형	세부 유형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	산	고원
		고산
		저산
	해안	
	강 또는 호수가	
인간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창조물을 가진 명승지	지하	
	혁명사적물을 가진 명승지	
	역사유적유물을 가진 명승지	
	문화오락시설을 가진 명승지	

\*출처: 『조선대백과사전』에 기초하여 저자 구성.

『조선지리지전서』의 본문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산의 명승’, ‘바다기슭의 명승’, ‘강기슭의 명승’, ‘호수의 명승’, ‘동굴의 명승’으로 분류하였다.

### 3. 『조선명승지도감』에 나타난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

『조선명승지도감』에서 명승지는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산과 바닷가, 강 하천과 호수, 폭포 등 자연풍치에서 뿐아니라 학술교양적 의의와 문화정서생활의 가치로 보아 국가적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 또는 지역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1</sup> 이 책에서는 명산, 바닷가, 호수, 섬, 온천, 폭포, 지하라는 총 7개의 명승지 유형을 소개한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산의 경우에는 ‘혁명의 성지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인민의 귀중한 향유물로 이름높은 명산들’,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 ‘중부지대와 서부지대의 명산들’, ‘우리나라의 북부, 중부, 동부지대의 이름난 명산들’,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산들’로 구분된다. 4, 5권은 지리적 분포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만, 1, 2, 3, 6권은 북한 당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산을 순서대로 유형화하여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는 ‘동해’와 ‘서해’로 구분하였으며, 호수는 ‘자연호’와 ‘인공호’로 구분하였다. 섬, 온천, 폭포는 9권에서 함께 서술되고 있으며, 제10권은 지하명승에 대한 내용으로 동굴 2개를 언급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조선명승지도감』의 목차로 본 북한 명승지의 유형

권수	유형 구분	내용
1권	명산편	혁명의 성지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2권		인민의 귀중한 향유물로 이름높은 명산들
3권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
4권		중부지대와 서부지대의 명산들
5권		우리나라 북부, 중부, 동부지대의 이름난 명산들
6권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산들
7권	바다가 명승편	동해명승 서해명승
8권	호수명승편	자연호 인공호
9권	섬, 온천, 폭포명승편	독특한 섬 및 온천명승지들과 폭포명승지들
10권	지하명승편	-

\*출처: 『조선명승지도감』에 기초하여 저자 구성.

<sup>21</sup>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명승지도감』 (평양: 조선민족유산보존사, 2017), 머리말.

#### 4. 소결

남한에서 명승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된다. 남한에서는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으로 유형을 구분하며, 역사문화명승 중 마을숲과 정원과 같은 경우 마을숲을 조영하거나 정원에서 조망하는 행위가, 사찰형에서는 사찰과 암자를 조영하는 행위, 산업기반형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행위가 투영된다. 이렇듯 남한에서 명승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면서 인간의 의미있는 행위가 축적된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의 명승지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연경치가 아름답고, 학술교양적 의의와 문화정서생활의 가치가 있는 곳이며 국가적으로 특별히 지정, 보호해야 하는 대상 또는 지역이다(〈표 6〉 참조).

법령을 통해 북한 명승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닷가, 섬을 언급하며 총 7개의 유형이 제시되었으나(제2조),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바닷가와 섬을 붙여 바닷가섬으로 분류하며 총 6개의 유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제2조). 2019년 수정보충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원문이 입수된다면 명확한 법적 유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대백과사전』과 『조선지리지전서』에서는 산, 호수, 동굴, 바닷가, 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같지만,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명승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이 백과사전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명승지의 유형을 혁명사적물, 역사유적유물, 문화오락시설이 있는 명승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도감 및 편람을 살펴보면,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편람』에서는 명산, 호수, 폭포, 동굴, 바닷가를 언급했지만, 『조선명승지도감』에서는 섬과 온천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명승지도감』과 법령에서 언급된 유형을 비교해보면, 『조선명승지도감』에서는 유형에서 계곡이 분류되고 있지 않지만, 명산 편에 계곡이 포함되어 있다.<sup>22</sup>

본 연구에서 재료로 삼았던 모든 자료에서 ‘이름난 산’, ‘명산’, 혹은 ‘산’이 항상 먼저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산’과 더불어 ‘호수’, ‘바닷가’, ‘동굴(지하)’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자연경관을 유형화한 것이며, 인간

<sup>22</sup> 유명한 구곡 명승 중 하나인 석담구곡을 명산 편에서 소개하고 있다.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조선대백과사전』이 유일하다(〈표 7〉 참조). 인간 행위에 의한 명승이 따로 분류만 안 된 것이지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다음 장에서 『조선명승지도감』을 대상으로 어떤 명승지가 어떤 유형에 포함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북한 명승지의 정의 종합

구분		정의	
법령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낮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들이다(제2조).	
사전	조선대백과사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창조물이 있는 곳	
	조선말대사전	명승	훌륭하고 이름난 자연풍치 또는 그런 자연풍치가 있는 곳
		명승지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이름난 곳
도감	조선명승지도감	명승지는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강하천과 호수, 폭포 등 자연풍치에서 뿐 아니라 학술교양적 의의와 문화정서생활의 가치로 보아 국가적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 또는 지역이다.	

\*출처: 저자 작성.

〈표 7〉 북한 명승지의 유형 종합

명승지 유형	연구 자료	법령		사전		도감 및 편람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민족유산 보호법	조선 대백과사전	조선 지리전서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편람	조선 명승지도감
자연	이름난 산	○	○	○(산)	○(산)	○(명산)	○(명산)
	호수	○	○	○(호수가)	○	○	○
	폭포	○	○	-	-	○	○
	계곡	○	○	-	-	-	-
	동굴	○	○	○(지하)	○	○	○(지하)
	바다가	○	○(바다가섬)	○(해안)	○(바다가섬)	○(해안)	○
	섬	○		-	-	-	○
	강	-	-	○	○(강기슭)	-	-
온천	-	-	-	-	-	○	
인간	혁명사적물	-	-	○	-	-	-
	역사유적유물	-	-	○	-	-	-
	문화오락시설	-	-	○	-	-	-

\*출처: 저자 작성.

## IV. 북한 명승지의 지정 현황

### 1. 개요

남한에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국가지정 명승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명승은 1979년까지 단 7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명승지정 재분류사업 이후 적극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2021년 11월 현재 남한에서는 총 118개소의 국가지정 명승이 지정되었다.<sup>23</sup> 남한에서 2006년 전까지 명승 지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명승이 기념물인 사적 및 천연기념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4</sup> 사적과 천연기념물은 각각 유적과 식물, 동물, 지질광물을 보존대상으로 하지만, 명승은 풍경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분이 어렵다. 1933년의 보존령은 일본의 1915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1915년 일본에서도 명승에 관해서 명쾌히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sup>25</sup>

북한의 명승지 관련 제도 또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승지 유형 중 ‘온천’과 ‘폭포’와 같은 경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남한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진 북한 명승지의 지정 현황을 파악한 연구와 오류를 파악하고, 새롭게 입수한 도감의 분석을 통해 지정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sup>23</sup>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3호 (2013), pp. 1211~1246; 이원호·김동현·Jant R. Balsom, “국내 명승 정책과 미국 국립공원 시스템의 지정 특성 비교,”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8권 3호 (2020), pp. 25~34; “문화재 종목별 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region=2&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2=&s\\_kdcd=15&s\\_ctcd=00&ccbaLcto=&ccbaKdcd=&ccbaAsno=&ccbaCtcd=&ccbaCpno=&ccbaCndt=&stCcbaAsno=&endCcbaAsno=&stCcbaAsdt=&endCcbaAsdt=&ccbaPcd1=&culPageNo=1&chGubun=&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gbn=3&pageNo=1\\_1\\_2\\_0](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region=2&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2=&s_kdcd=15&s_ctcd=00&ccbaLcto=&ccbaKdcd=&ccbaAsno=&ccbaCtcd=&ccbaCpno=&ccbaCndt=&stCcbaAsno=&endCcbaAsno=&stCcbaAsdt=&endCcbaAsdt=&ccbaPcd1=&culPageNo=1&chGubun=&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gbn=3&pageNo=1_1_2_0)> (검색일: 2021.11.7.).

<sup>24</sup> 국립문화재연구소, 『명승정책 활성화, 그 후 5년(2006~2010)』,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 25;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p. 1214.

<sup>25</sup> 위의 논문, p. 1215.

## 2. 그동안 남한에서 파악한 북한 명승지 지정 현황

### 가. 남한의 국가기관에서 언급한 북한 명승지 지정 현황

남한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지정 명승지 현황에 대해서 적게는 16개를, 많게는 17개를 언급하고 있다. 이 현황표의 근원은 국토통일원의 보고서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 및 교류방안』에서 시작하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1957년과 1962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중앙년감』을 인용하였다.<sup>26</sup> 이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북한의 문화재 실태와 현황』, 『북한 문화재도록』과 정재훈·이용조의 단행본에서도 인용되었다.<sup>27</sup> 이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연감』에도 같은 내용이 인용되었으며,<sup>28</sup>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 국보 연혁자료집』에도 인용되어 나타난다.<sup>29</sup>(〈표 8〉 참조)

이 목록은 북한에서 국가적으로 지정한 명승지의 목록을 남한의 국가기관에서 명시한 목록이며, 북한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감인 『조선중앙년감』을 인용하였기에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62년 연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1962년 이후의 지정 명승지 현황의 변화를 감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4년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북한의 명승지 목록’에서는 『조선향토 대백과』에 기인하여 223개의 명승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sup>26</sup>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 및 교류방안』(서울: 국토통일원, 1984)

<sup>27</sup>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 및 교류방안』; 문화재관리국, 『북한의 문화재 실태와 현황』(서울: 문화재관리국, 1985); 문화재관리국, 『북한문화재도록』(서울: 문화재관리국, 1993); 정재훈·이용조, 『북한의 문화유산1』(파주: 고려원, 1993).

<sup>28</sup> 문화재청, 『문화재연감』(대전: 문화재청, 2000, 2002~2009).

<sup>29</sup>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 국보 연혁자료집』(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표 8〉 남한의 국가기관에서 파악한 북한의 명승지 지정 현황

자료 지정번호	국토통일원 (1984), 문화재관리국 (1985)	자료 지정번호	문화재관리국 (1993)	자료 지정번호	문화재청 (2000, 2002~2009)	자료 지정번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1	牡丹峰	1	목단봉(牡丹峰)	1	牡丹峰	1	모란봉(牡丹峰)
2	약산동대	2	낙산동대 (樂山東臺)	2	樂山東臺	2	약산동대 (樂山東臺)
3	妙香山	3	묘향산(妙香山)	3	妙香山	3	묘향산(妙香山)
4	*동룡굴	4	동용굴(口龍窟)	4	口龍窟	4	동룡굴(竈龍窟)
5	백령굴	5	백령대굴 (百嶺大窟)	5	百嶺大窟	5	백령굴(百嶺窟)
6	九月山	6	구월산(九月山)	6	九月山	6	구월산(九月山)
7	장수산	7	장수산(長壽山)	7	長壽山	7	장수산(長壽山)
8	석담구곡	8	오담구곡 (石潭九曲)	8	石潭九曲	8	삼방협
8	*삼방협	-	-	9	-	8	석담구곡 (石潭九曲)
9	몽금포	10	몽금포(夢金浦)	10	夢金浦	9	몽금포(夢金浦)
10	박연폭포	11	박연폭포 (朴淵瀑布)	11	朴淵瀑布	10	박연폭포 (朴淵瀑布)
11	-	12	금강산(金剛山)	12	金剛山	-	-
12	金剛山	13	총석정(叢石亭)	13	叢石亭	12	금강산(金剛山)
13	총석정	14	시중호(侍中湖)	14	侍中湖	13	총석정(叢石亭)
14	시중호	15	칠보산(七寶山)	15	七寶山	14	시중호(侍中湖)
15	-	16	주을온천 (朱乙溫泉)	16	朱乙溫泉	-	-
16	-	17	백두산(白頭山)	17	白頭山	-	-
17	七寶山	-	-	-	-	17	칠보산(七寶山)
18	주을온천	-	-	-	-	18	주을온천 (朱乙溫泉)
18	白頭山	-	-	-	-	18	백두산(白頭山)

주: 각 자료 별로 원문에 표기된 명승지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정리하였다.

\*는 국토통일원(1984)과 문화재관리국(1985)에서 1957년 『조선중앙년감』에는 나타나지만 1962년의 연감에서 삭제된 명승지라고 명시하고 있음.



## 나. 『조선향토대백과사전』에 기반한 북한 명승지 현황

다수의 남한의 연구자들은 『조선향토대백과사전』에 언급된 명승지를 발췌하여 정리한 김지혜, 문화재청, 이강민의 연구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sup>30</sup> 하지만 문화재청은 총 223개의 명승지를,<sup>31</sup> 이강민은 p. 16에서는 223개의 명승지를,<sup>32</sup> pp. 17~18에서는 224개의 명승지를 언급하였으며, 김지혜는 본문에서는 202개로, 부록에서는 203개로<sup>33</sup> 서술하는 등의 차이를 보여 준다.<sup>34</sup>

김지혜는 2005년의 통일부 분석자료에서 북한의 명승지를 320여 개로 언급하고 있지만, 『조선향토대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명승지인 202개 혹은 203개만을 발췌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2005년 통일부 분석자료’는 『조선중앙통신』 2005년 12월 2일 기사, 「유적유물들의 옛모습이 완전해지는 계절전」을 소개한 통일부 주간 동향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14km에 달하는 성들과 50여 개의 무덤을 비롯하여 1,020여 개 대상의 유적들, 320여 개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수와 관리, 개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의 본문에서 언급된 320여 개는 명승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을 통칭하여 320여 개로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맥상 2005년에 보수, 관리, 개건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320여 개인 것이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총 개수가 320여 개인 것은 아니다. 1994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리승대·리금철의 『천연기념물편람』에서도 총 467개(삭제된 것 포함)의 천연

<sup>30</sup> 김지혜, “우리나라 명승 지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 중, 일, 북한과의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문화재청, “북한 명승지 목록(일부),” ([https://portal.nrich.go.kr/kor/originalUsrView.do?menuIdx=66&info\\_idx=922&bunya\\_cd=412](https://portal.nrich.go.kr/kor/originalUsrView.do?menuIdx=66&info_idx=922&bunya_cd=412)) (검색일: 2021.11.7.);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sup>31</sup>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pp. 17~18과 비교하면, 대부분 같지만 금강산 해금강 총석정구역이 누락되어 총 223개이다.

<sup>32</sup>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p. 16 표의 행정구역별 명승지 갯수를 더하면 총 222개이지만, 합계에는 223개로 표기하였다. pp. 17~18의 표와 비교하면 평양형승을 8개로, 금강산 해금강을 3개로 1개씩 줄여서 표기한 것이다.

<sup>33</sup>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pp. 17~18과 다른 점은 묘향산 7개, 칠보산 14개, 금강산 해금강 총석정구역이 누락되었다.

<sup>34</sup> 박수진 외는 이강민의 223개를 인용하였으며, 박대남, 전영선·신준영은 문화재청을 인용하여 223개로, 김성욱은 김지혜의 본문에 표기된 202개를, 이우영과 조우찬은 김지혜의 부록에 나타난 203개를 인용하였다. 박수진 외, 『북한지리백서』;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김성욱,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 pp. 501~533; 이우영, “북한 명승지 정책의 성격,” pp. 131~170; 조우찬, 『북한 김정일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부각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9).

기념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개수만 하더라도 320개를 훌쩍 넘는 것을 알 수 있다.<sup>35</sup>

이렇듯 연구자별로 같은 자료인 『조선헌토대백과사전』을 인용하였지만 서로 다른 명승지 현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따라서 『조선헌토대백과사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선헌토대백과사전』은 2004년 남한의 평화문제연구소와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공동 편찬한 총 2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이다. 북한 각 지역의 지명, 자연, 역사, 사회경제, 민속 등을 망라하였다.<sup>37</sup> 이 백과사전은 총 20권으로 1권부터 16권까지는 도급 행정구역 별로 각 지역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17권은 인물, 18권은 민속, 19권~20권은 색인에 대한 내용이다. 1권부터 16권까지의 『조선헌토대백과사전』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224개로 분석하였던 자료에서 누락한 구월산, 백두산, 금강산 내금강 만천구역, 강원도 명사십리, 시중호, 동정호, 총석정, 삼일포, 삼방협, 설봉산, 철령, 아호비령을 추가하여 총 236개소의 명승지를 정리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조선헌토대백과사전』에서 북한의 명승지를 발췌하였다. 첫 번째는 ‘명승지’라는 별도의 대제목으로 구분·소개되는 경관 자원이다. 『조선헌토대백과사전』은 도급 행정구역별로 각 권이 구분되는데, 각 권마다 처음 50페이지 정도는 도급 행정구역의 지도, 개관, 지명유래, 역사, 옛 이름, 자연, 산과 내, 경제, 교통, 문화, 명승지, 민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이후로 도에 소속된 시군급 행정구역에 대해 가나다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 행정구역에서 대표되는 명승지, 시·군급 행정구역에서 소개하는 명승지가 구분되어 소개되기도 한다. 예컨대, 『조선헌토대백과사전 1(평양)』의 p. 17의 목차에서 평양시의 명승지로서 평양팔경과 평양형승을 소개하고 있으며, p. 28의 목차에서 평양시 강동군(현재는 평양시에서 분리됨)의 명승지로서 강동팔경, 삼등리36동천, 삼등팔경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북한의 주요 산이다. 예컨대 『조선헌토대백과사전 5(평안북도)』의 p. 12의 목차에서 묘향산은 ‘명승지’라는 대제목에 속한 경관 자원이

<sup>35</sup> 리승대·리금철, 『천연기념물편람』.

<sup>36</sup> 『조선헌토대백과사전』에서 각 시군별 명승지를 소개하고 있다.

<sup>37</sup> “『조선헌토대백과사전』과 평양의 지명유래,” 『통일뉴스』, 2015.5.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48>> (검색일: 2021.11.7.).

아니라, 평안북도에 속한 시군과 동등한 위계로 독립된 장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산 중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은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이들 구역을 1개소의 명승지로 취급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묘향산의 경우에는 7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7개소의 명승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 기준으로 보면, 『조선향토대백과사전 11(강원도)』 p. 45~46에서 강원도 내 명승지로서 송도원, 명사십리, 시중호, 동정호, 총석정, 삼일포, 금강산, 삼방협, 설봉산, 철령, 아호비령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전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산시의 명승지로 소개된 송도원만을 명승지로 발췌하였다. 앞서 언급한 강원도 명승지 중 시중호, 동정호, 총석정, 삼일포의 경우 위치상 금강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조선향토대백과사전』의 서술방식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구월산, 백두산, 금강산 내금강 만천구역은 각각 『조선향토대백과사전 8(황해남도)』의 p. 50~60, 『조선향토대백과사전 16(량강도)』의 p. 50~84와 『조선향토대백과사전 11(강원도)』의 p. 64~66에서 소개하고 있으나 누락되었다.

『조선향토대백과사전』은 분단 이전부터 선조들이 유람해오던 팔경과 구곡과 같은 경승과 더불어 명산을 소개하고 있어 북한 전역의 명승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하지만, 이 백과사전에서 천연기념물을 소개할 때에는 지정번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명승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백과사전에 언급된 명승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3. 『조선명승지도감』으로 본 북한 명승지의 지정 현황

본고에서는 국가지정 명승지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명승지도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도감에서는 총 68개의 명승지를 소개하고 있다. 유형별, 행정별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유형별 명승지 지정 현황

유형별 명승지 현황을 살펴보면, 명산 28개, 바닷가 14개, 호수 15개, 섬 3개, 온천 3개, 폭포 3개, 지하 2개이다. 명산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기에 명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1520~1604)이

「조선사산평어(朝鮮四山評語)」에서 언급했던 4대 명산인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지리산을 인용해오다 1986년 이후부터 4대 명산에 백두산을 추가하여 ‘조선 5대 명산’을 꼽았다. 특히, 북한에서 백두산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과 관련된 전적지와 사적지가 다수 분포해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생가인 백두산 밀영 고향집이 위치한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진다.<sup>38</sup> 1993년 10월 9일 김일성 주석은 ‘재일 조선녀성상공인대표단과 한 담화’에서 대표단에게 금강산, 묘향산 방문을 독려하며 5대 명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sup>39</sup>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금강산과 묘향산에도 가보았다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금강산과 묘향산은 백두산, 구월산, 지리산과 함께 우리 나라의 5대 명산입니다. 우리 나라의 5대 명산가운데서 4개는 북에 있고 1개는 남에 있습니다. 옛날에 서산 대사라는 중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 나라 5대 명산 가운데서 묘향산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묘향산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산이 커서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는 묘향산에서 살았습니다. …중략… 금강산, 묘향산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는데 이어 지금은 구월산을 꾸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산을 각종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인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배움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지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1990년대에 구월산과 칠보산이 관광지로 개발되었는데, 1996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칠보산을 개발한 후 기존의 5대 명산에 칠보산을 추가하여 ‘조선 6대 명산’을 꼽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sup>40</sup>

『조선명승지도감』에서 소개하고 있는 총 28개의 명산에는 ‘조선 6대 명산’ 중 남한에 위치한 지리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명산이 모두 포함된다(〈표 9〉 참조). 도감에서는 28개의 명산을 그 특성과 분포에 따라 6권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제1권은 바로 ‘혁명의 성지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명산으로 김일성 주석의 고향인 만경대와 항일혁명 사적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백두산과 더불어 김정일

<sup>38</sup> 1980년대 말 김정일 위원장의 생가인 ‘백두산 밀영 고향집’을 복원하고, 고향집에서 올려다 보이는 봉우리인 ‘장수봉’을 ‘정일봉’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기 시작했으며, ‘정일봉’이라는 바위 글씨까지 새겼다.

<sup>39</sup> 김일성, “재일조선녀성상공인대표단과 한 담화(1993.10.9).” 『김일성 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55~261.

<sup>40</sup> 김정일, “칠보산지구를 인민의 유원지로 잘 꾸리는데 대하여: 칠보산지구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6.11.2).” 『김정일 선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p. 468~477.



〈표 9〉 『조선명승지도감』에 나타난 유형 별 명승지 현황

유형	개소	명승지 사례*	출처
명산	28	만경대, 백두산 밀영, 백두산, 묘향산, 장자산, 동흥산, 대성산, 금강산, 모란봉, 룡악산, 광명, 구월산, 봉화산, 수양산, 삭주거문산, 신양금강, 신평금강, 칠보산, 백운산, 약산동대, 의주통근정, 삼부연, 정방산, 옥련산, 장수산, 경암산, 우산장, 석담구곡	1~6권
바다가	14	송도원, 명사십리, 총석정, 집삼, 마전, 송단, 속후, 학사대, 기암, 서해갑문, 몽금포, 룡수포, 장산곶, 철산장송	7권
호수	15	삼지연,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 장연호, 연풍호, 수풍호, 태성호, 석암, 은파호, 서흥호, 부전호, 연탄호, 구암호, 송흥	8권
섬, 온천, 폭포	9	룡라도, 비파도, 와우도, 경성상온포, 경성하온포, 김책세천, 울림폭포, 박연폭포, 동림폭포	9권
지하	2	송암동굴, 룡문대굴	10권
합계	68	-	-

\*페이지 순으로 정렬하였다. 밑줄은 각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명승지이다.

\*\*출처: 『조선명승지도감』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 나. 행정구역별 명승지 지정 현황

행정구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평양이 면적대비 가장 많은 명승지를 보유하고 있다. 능라도를 제외한 5개의 명승지가 모두 명산 유형에 속한다. 만경대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으며, 대성산에는 항일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혁명 열사릉과<sup>41</sup> 더불어 대성산 유희장과 중앙동물원과 같은 유희시설이 자리해있다.

평양시 다음으로는 함경남도가 10개로 많았으며, 강원도와 황해남도가 9개의 명승지를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조선 6대 명산’ 중 하나인 금강산이 있으며, 예부터 잘 알려진 명승지인 총석정과 삼일포와 같은 관동팔경(關東八景)이 포함되었다. 전세계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에는 김덕훈 총리가 금강산에 방문하여 고성항해안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을 돌아 보면서 금강산지구를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조성할 것을 언급하였다.<sup>42</sup> 강원도에

<sup>41</sup>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924&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odr=news&eqDiv=%ED%95%98>> (검색일 : 2021.11.7.).

<sup>42</sup> “김덕훈총리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지료해,” 『조선중앙통신』, 2020.12.20.

위치한 울림폭포는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현지도 이후 명승지로 개발되었다. 울림폭포는 김정일 시기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대표되는 선군팔경(先軍八景)에서 사방 4km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를 강조한 ‘울림폭포 메아리’(울림폭향)으로 일컬어진다.<sup>43</sup>

함경북도에는 총 7개의 명승지가 있으며 이 중 세 곳이 온천이다. 그 중 온포온천과 경성온천은 각각 경성상온포, 경성하온포로 언급되었다. 경성온천은 일제강점기 유명한 명승지이자 관광지였던 주을온천이다. 김일성 시기에 경성온천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모래온천이기에 경성모래온천이라고도 불린다. 온포온천과 경성온천은 각각 천연기념물 375호, 376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1년에 한 번은 경성온천에 방문하면서, 경성온천의 활성화를 위해 경성비행장의 규모를 더 키울 계획이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경성비행장은 대규모 온실농장과 양묘장으로 조성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김일성 시기부터 집착해 온 북한의 유명한 주을 온천을 김정은이 버렸나”라는 의심을 가졌다.<sup>44</sup> 하지만 2020년 2월 『조선신보』 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경성군 하온포로동자구에 경성관광려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sup>45</sup> 우려와는 다르게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경성군 일대의 온천 개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양강도에는 백두산 밀영, 백두산, 삼지연 등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 역사와 관련된 명승지가 위치한다. 백두산 밀영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로 주장하고 있는 ‘백두산 밀영 고향집’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도감에서 ‘백두산 밀영 고향집’과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을 따 지은 ‘정일봉’에 대해 15페이지 가량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한다.<sup>47</sup> 그밖에 황해북도는 6개소가, 남포시, 평안남도는 각각 4개소가, 나선시, 개성시, 자강도는 각각 1개소가 언급되었다.(〈표 10〉 참조)

<sup>43</sup>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北 울림폭포 자랑,” 『데일리 NK』, 2005.8.26. <<https://www.dailynk.com/%EC%97%AC%EA%B8%B0%EA%B0%80-%EB%B0%94%EB%A1%9C-%EB%AC%B4%EB%A6%89%EB%8F%84%EC%9B%90%E5%8C%97-%EC%9A%B8%EB%A6%BC%ED%8F%AD%ED%8F%AC-%EC%9E%90/>> (검색일: 2021.12.20.).

<sup>44</sup> “김정은 주을 온천을 버렸나?,”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2019.10.22., <<https://www.lkp.news/mobile/article.html?no=6515>> (검색일: 2021.11.7.).

<sup>45</sup> “경성관광려관 호평리에 운영: 온천시설도 곱게 꾸려놓아,” 『조선신보』, 2020.2.7.

<sup>46</sup> “각지에서 온천탐사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2020.12.20.

<sup>47</sup> 이 도감에서 ‘백두산 밀영’은 총 27페이지가, ‘백두산’은 총 40페이지가 할애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과 그 주변 일대의 유적 부분을 서술함에 상당히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조선명승지도감』에 나타난 명승지 분포 현황

행정구역	개소	명승지 사례*
평양시	6	만경대, 대성산, 모란봉, 룡악산, 봉화산, 룡라도
남포시	4	우산장, 서해갑문, 태성호, 와우도
나선시	1	비파도
개성시	1	박연폭포
강원도	9	금강산, 광명, 송도원, 명사십리, 총석정,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 울림폭포
양강도	3	백두산 밀영, 백두산, 삼지연
자강도	1	장자산
평안남도	4	신양금강, 연풍호, 석암, 송암동굴
평안북도	7	묘향산, 약산동대, 의주통군정, 철산장승, 수풍호, 동림폭포, 룡문대굴
함경남도	10	동흥산, 백운산, 삼부연, 옥련산, 마진, 송단, 속후, 학사대, 기암, 부전호, 칠보산
함경북도	7	칠보산, 집삼, 장연호, 송흥, 경성상온포, 경성하온포, 김책세천
황해남도	9	구월산, 수양산, 삭주거문산, 장수산, 석담구곡, 몽금포, 룡수포, 장산꽃, 구암호
황해북도	6	신평금강, 정방산, 경암산, 은파호, 서흥호, 연탄호
합계	68	-

\*페이지 순으로 정렬하였음.

\*\*출처: 『조선명승지도감』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 V. 결론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명승지 관련 법령과 문헌을 통해 북한 명승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 명승지의 지정 현황에 대한 남한 선행 연구의 오류를 짚어보고, 『조선명승지도감』을 통해 명승지의 지정 현황(2017년 기준)을 유추하였다. 이 연구는 남한의 명승 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재생산되던 오류를 검토하고, 북한에서 최근 발간한 도감을 발굴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 문화재 교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발굴·조사·보존하기 위해서는 북한 소재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북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sup>48</sup>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명승지의 지정 현황을 제시하여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명승지가 될만한 장소를 발굴하여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한반도 명승지 자원 목록 작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컨대 인간 활동과 관련된 유형으로 언급한 사례는 『조선대백과사전』 밖에 없었지만, 『조선명승지도감』을 통해 명승지 사례를 살펴보면, 백두산 밀영과 같이 혁명사적물이 다수 분포하거나, 묘향산처럼 역사유적유물이 다수 있거나, 만경대처럼 문화오락 시설을 포함한 명승지가 존재한다. 남한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전국의 명승지 자원조사를 진행하며 잠재 명승지 자원으로서 1999년 개장한 여의도 공원이나<sup>49</sup> 1968년 착공한 남해대교가<sup>50</sup> 언급된 바 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보존·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2020년 9월에는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호로 ‘한강대교’가 지정되었다.<sup>51</sup> 이러한 맥락에서 근현대의 경관자원 또한 명승지로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추후 남북이 보전해야 할 한반도 명승지 자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고민하고 목록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도 북한에서는 전국의 온천을 개발하거나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는<sup>52</sup> 노력이 지속되는 등 명승지를 관광지로서 개발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향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명승지 정책의 긴밀한 변화를 탐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명승지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꾀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제출: 11월 8일 ■ 심사: 12월 3일 ■ 채택: 12월 15일

<sup>48</sup>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p. 87.

<sup>49</sup> 문화재청, 『명승지조사 보고서(서울특별시)』, (대전: 문화재청, 2001), pp. 235~236.

<sup>50</sup> 문화재청, 『명승지조사 보고서(경상남도)』, (대전: 문화재청, 2004), p. 249.

<sup>51</sup>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호 탄생… 한국전쟁 총탄 흔적 ‘한강대교’ 등 3건,”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0.9.10.,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8278>> (검색일: 2021.11.7.).

<sup>52</sup> “유네스코 “백두산 등 세계지질공원 심사, 코로나로 지연,” 『VOA』, 2020.6.2.,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life\\_unesco-mount-paektu/6031776.html](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life_unesco-mount-paektu/6031776.html)> (검색일: 2021.11.7.).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0.
- 국립문화재연구소. 『명승정책 활성화, 그 후 5년 2006~2010』.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_\_\_\_\_. 『북한 국보 유적연혁자료집』.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 및 교류방안』. 서울: 국토통일원, 1984.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리승대·리규철. 『천연기념물편람』. 평양: 농업출판사, 1994.
- 문화재관리국. 『북한 문화재 실태와 현황』.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5.
- \_\_\_\_\_. 『북한문화재도록』.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3.
- 문화재청. 『명승자원조사 보고서(경상남도)』. 대전: 문화재청, 2004.
- \_\_\_\_\_. 『명승자원조사 보고서(서울특별시)』. 대전: 문화재청, 2001.
- \_\_\_\_\_. 『문화재연감』, 대전: 문화재청. 2000, 2002~2009.
- \_\_\_\_\_. 『천연기념물 백서』. 대전: 문화재청, 2003.
- 박대남. 『북한의 문화재 실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박상진·김창규.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박수진 외. 『북한지리백서』. 서울: 푸른길, 2020.
- 이선. 『한국의 자연유산』. 서울: 수류산방중심, 2009.
-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정재훈·이용조. 『북한의 문화유산1』. 파주: 고려원, 1993.
- 조우찬. 『북한 김정은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부각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9.
-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20』.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
- 황기원. 『경관의 해석』. 서울: 서울학교출판문화원, 2011.

### 2. 논문

- 김서린. “경승지의 정치적 변용: 북한 묘향산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김성욱.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제5권 1호 2012.
- 김지혜. “우리나라 명승 지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 중, 일, 북한과의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3호, 2013.

이강민. “북한 명승의 현황 및 지정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이우영. “북한 명승지 정책의 성격.” 『통일인문학』. 제53권, 2012.

이윤·차은영. “북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경제적·제도적 고찰.” 『한국자연보호학회지』. 제9권 1호, 2015.

이원호·김동현·Jant R. Balsom. “국내 명승 정책과 미국 국립공원 시스템의 지정 특성 비교.”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8권 3호, 2020.

이진희. “동북아시아 명승 보존관리 비교연구: 한국·일본·대만·중국·북한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3. 기타 자료

『데일리 NK』.

『로동신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통일뉴스』.

『NK경제』.

『VOA』.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문화재 종목별 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조선의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 평양: 조선민족유산보존사, 201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 Abstract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cenic spots by analyzing laws and literature

*Kim, Seolin and Sung, Jongsang*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type of North Korean scenic spot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North Korean laws and literature related to scenic spots. In addition, the status of designation of North Korean scenic spots as of 2017 was inferred through the recently published 『Atlas of Scenic Spo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spite the pandemic situation, North Korea is striving to utilize its own scenic spots, such as building a resort in hot springs or strengthening its willingness to develop international tourism in the Geumgangsan district. In the future, projects such as measuring potential resources of scenic spots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suggested to inter-Korean Exchange Project using scenic spo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ed errors that have been reproduced in the field of scenic research in South Korea, and discovered and organized a recently published atlas in North Korea.

**Key Words:** Landscape of North Korea, Historical Cultural Landscape,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Cultural Exchange